# 한눈에 형법 초판 추록

페이지는 초판 3쇄 발행(2010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초판에서 2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19p. 3. 명확성의 원칙 - 위배되지 않는 경우 (추가)**

㉕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누구든지'와'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는 표현

㉖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규정 중 '이해관계인'

**20p.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위배되지 않는 경우 (추가)**

⑮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를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21p.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위배되는 경우 (추가)**

㉚「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경우

**24p. 구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추급효 ○ (추가)**

⑮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그 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고시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된 경우

**24p. 구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추급효 ×(추가)/ 암기방법 (추가)**

⑪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 암기방법(추급효가 부정되는 경우) : 민 / 자 / 청 / 증 / 축 / 건 / 공 / 근 / 계 / 의

**25p. 2.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내용" (추가)**

④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 – 고소권 ○

**25p. 2. 장소적 적용범위 - 보호주의 제6조 "내용" (추가)**

③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경우 -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잠입•탈출)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④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 - 대한민국형법 적용

**39p. (2)부작위범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추가)**

③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

**45p. (3)인과관계의 인정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㉘ 불법으로 재하도급 받은 자가 시공방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경우

**51p. (2)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⑩ 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51p. (2)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

⑩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 의사

**54p. (4) 신뢰의 원칙 - 적용되는 경우 - 기 타 (추가)**

③ 약사의 의약품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관능시험과 기기시험을 하지 않고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

**56p. ⑶ 결과적 가중범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예견가능성 ○ (추가)**

⑥ 가연물질이 많은 대학도서관 옥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여 7명의 전경이 화재로 사망한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56p. ⑶ 결과적 가중범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추가)**

⑤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60p. ⑴ 정당방위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상당성 ○ (추가)**

⑤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60p. ⑴ 정당방위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 상당성 ×(변경)**

⑥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63p. (1) 긴급피난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65p. (1) 자구행위 인정 여부 - (추가)**

⑧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자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경우(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가구점사건)

**69p. 노동쟁의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 목적의 정당성 ×(추가)**

⑪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한 경우(업무방해죄)

⑫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72p.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⑳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73p.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정당행위가 부정되는 경우 (추가)**

㉛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㉜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

㉝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공직선거법위반)

㉞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뇌물죄)

**81p. (2) 정당한 이유 유무 -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추가)**

㉕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탐정사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당국이 탐정업의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상 금지된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㉖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㉗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㉘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경우

**88p. ⑵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㉑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관세포탈예비죄)

**94p. ⑵ 예비.음모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⑧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甲 - 살인죄의 예비 ○)

**94p. ⑵ 예비.음모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②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98p. ① 공동실행의사(공모) -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④ 안수기도에 참여하여 목사가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폭행행위를 보조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신도(폭행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

**98p. ① 공동실행의사(공모) - 공모가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⑦ 피고인이 제3자에게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경우

⑧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최후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공범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 – 사기죄 ×)

**99p. 공모공동정범 표 (추가)**

⑥ 전국노점상총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체포된 경우, 단순가담자인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기능적 행위지배× – 공모공동정범×)

**100p. ⑶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⑥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위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 공동정범 ○)

⑦ 게임장 운영자 甲과 상품권환전소 운영자 乙이 공모하여 甲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乙은 고객들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

**102p. ⑵ 간접정범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⑨ 회사 경영자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에 관련하여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111p. 불가벌적 사후행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㉒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별도의 주거침입죄○)

**111p. ⑵ 포괄일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113p. ⑵ 포괄일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㉔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㉖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

㉗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

**116p. ⑶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추가)**

㉙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16p. ⑶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실체적 경합 (추가)**

㉙ 횡령을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

㉚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경우(절도죄와 사기죄)

㉛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

㉜ 반복된 히로뽕 제조행위간에 9개월의 간격이 있고 범행장소가 상이한 경우

㉝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경우(사기죄와 횡령죄)

㉞ 흡연을 위해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이틀 이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경우(대마매매죄와 대마소지죄)

㉟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경우(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

㊱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

㊲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 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준 경우(수개의 업무상 배임죄)

㊳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

㊴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별개의 횡령죄가 성립)

㊵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

㊶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CD)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절도죄와 영업비밀부정사용죄)

㊷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

**118p. 2. 형벌의 범위**

징역·금고 - 무기·종신, 단 10년(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 가능 *( )는 개정형법상(2010.10.16 이후)

- 유기·1개월 이상 15년(30년) 이하, 단 가중시 25년(50년) 이하 *( )는 개정형법상(2010.10.16 이후)

**119p. (1)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것 (추가)**

⑯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 ⇨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

**120p. (2) 추징 - 추징 관련 판례 (추가)**

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 –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122p. (1)상습범 가중처벌 - 개인적 법익(추가)**

·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외)

**123p. (4) 법률상 감경 (수정)**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 안은 개정형법상(2010.10.16 이후)

무기징역·무기금고 - 7년 이상(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 안은 개정형법상(2010.10.16 이후)

**124p. 작량감경 관련 판례 (추가)**

④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124p. 자수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⑤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⑥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자수 ×)하고 ,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경우

**126p. 누범 관련판례 (추가)**

⑥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 ⇨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 ○ - 누범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님)

**127p.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 가석방 요건 (수정)**

· 징역 ·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무기의 경우 10년(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 ) 안은 개정형법상(2010.10.16 이후)

**128p. 관련판례 - 사회봉사명령 (추가)**

③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 - 허용 ×

④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135p. 존속살해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⑤ 양자가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⑥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후에 생부를 살해한 경우

⑦ 외손자가 외조부를 살해한 경우(직계존속 ○)

**135p. 존속살해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⑤ 계자가 계모를 살해한 경우(계모, 계부, 적모 - 직계존속 ×)

⑥ 사망한 남편의 모를 살해한 경우, 내연의 처의 부를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의 배우자 - 살아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

**137p. 상해의 해당 여부 -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⑦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힌 가슴부 찰과상 등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된 경우

**139p. (2) 폭행의 해당 여부 -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⑦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경우

**139p. (3) 위험한 물건의 해당. 휴대 여부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험한 물건 ×(추가)**

⑥ 소형자동차(라노스)를 이용하여 다른 중형자동차(소나타)를 충격한 경우의 소형자동차

**143p.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⑮ 택시기사 甲은 진행차선의 1차선상으로 날아 떨어지는 것을 전방 15m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박한 나머지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피하지 못하여 자신의 차로 乙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⑯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과정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⑰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43p.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⑮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한 경우

⑯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의 도급인(주의의무 ×)

**144p. (1) 유기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유기죄의 보호의무 ○)

**146p. (2) 협박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 협박죄의 기수시기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 ○

②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협박죄의 기수)

③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146p. (2) 협박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 해악의 고지 ×(추가)**

⑨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 경우(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으므로)

**148p. 체포,감금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⑬ 甲이 乙女에게 보복하기 위해 협박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운 후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乙女를 내려주지 않고 망우리공동묘지까지 약 20분간 달린 경우(감금죄만 성립 : 망우리공동묘지 사건)

**149p. 약취,유인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⑧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

⑨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151p. (1) 강간죄 - 인정되는 경우 -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④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151p. (1) 강간죄 - 부정되는 경우 -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④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152p. (2) 강제추행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⑥ 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경우

**153p.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③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경우(교회 여신도들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 ○)

④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

**155p.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 해당하는 경우 (추가)**

⑦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 ○)

**155p. 2) 구체적 사실의 적시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⑦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경우

⑧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

**156p. 3) 명예훼손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비방할 목적 ×)

**157p. 2)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 적용되는 경우 (추가)**

⑦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특정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공공의 이익 ○ : 구원파 사건)

⑧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경우

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⑩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공공의 이익 ○)

**159p. 4. 모욕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③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비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 라며 욕을 할 때 그 주위에 피고인의 처, 딸, 피해자의 아들(사위), 매형이 있던 경우(공연성 ×)

**160p. (1) 업무의 해당 여부 -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⑥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 업무방해죄 × / 공무집행방해죄 ×)

⑦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와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

⑧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후, 양도인의 침해행위(양수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162p. (2) 업무방해죄의 해당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위계(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 (추가)**

⑯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162p. (2) 업무방해죄의 해당 여부 - 부정되는 경우 - 위계(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추가)**

⑭ 학부모로부터 합격청탁을 받은 A교수가 해당 수험생에게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한 후 채점위원으로 예상되는 B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를 부정채점하여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받았으나 후에 B가 아니라 C교수가 채점위원으로 선정되자 C교수에게 부정채점을 부탁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고 즉시 교무처장에게 신고한 경우

**163p. (2) 업무방해죄의 해당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추가)**

⑮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⑯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163p. (2) 업무방해죄의 해당 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아래 (추가)**

▶ 허위사실 유포

①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함.

**163p. (3)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②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경우

**164p. (5)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 인 정 (추가)**

③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

**165p. 8. 경매·입찰방해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⑦ 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

⑧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⑨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165p. 8. 경매·입찰방해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

⑦ 한국토지공사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의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분양을 신청한 경우(입찰절차 × – 입찰방해죄 ×, 업무방해죄 ×)

⑧ 입찰절차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⑨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인의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절차를 진행한 경우(입찰절차 ×)

**167p. (1) 주거침입죄의 객체 - 주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

**168p. (2) 주거침입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⑧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궈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169p. (2) 주거침입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⑱ 소유자가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⑲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별도의 주거침입죄 ○)

⑳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경우(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170p. 1. 형법상 재물 -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⑱ 주권

**170p. 1. 형법상 재물 -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⑧ 주식

**173p. 3. 불법영득의사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73p. 3. 불법영득의사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⑳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경우

**175p. (1) 절도죄의 객체 - 절도죄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⑦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⑧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175p. (1) 절도죄의 객체 - 절도죄가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한 경우

⑦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⑧ 두 사람으로 된 생강농사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나오지 않자,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177p. (5) 특수절도죄 -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추가)**

③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연 경우(실행의 착수 ○)

**178p. (1) 강도죄의 인정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④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폭행행위와 재물취득사이의 인과관계 ×)

**179p. (2) 강도죄의 죄수관계 (추가)**

⑧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명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180p. 준강도의 인정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 (추가)**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180p. 준강도의 인정여부 - 인정되는 경우 -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 아래 (추가)**

▶ 특수강도의 준강도

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185p. (1) 객체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⑧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하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가압류채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재산상 이익 ○)

**185p. (1) 객체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⑫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재산상이익 ×)

**187p. 기망행위-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⑬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188p. 부작위에 의한 기망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채권자가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편취 ×)

**189p. (3) 소송사기 -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⑩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액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한 경우(사기 미수)

⑪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189p. (3) 소송사기 - 사기죄가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⑭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불법영득의사 ×, 실행의 착수 ×)

⑮ 허위채권으로 가압류 신청한 경우(실행의 착수)

**190p. (4) 처분행위 - 인정되는 경우 (변경 & 추가)**

⑥ 무효인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변경)

⑦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 (추가)

**190p. (4) 처분행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⑦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금 1,100만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乙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丙에게 乙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丙을 기망하고 피해자 丁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丁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丙은 형식적인 매도인에 불과하므로 매수인 丁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 ×)

**191p. (5) 사기죄의 인정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전전유통되다가 부도가 난 경우 그 최종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위 전매자

⑩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시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인 용지분양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

**193p. (5) 사기죄의 인정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㉗ 대출의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 ○)

㉘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한 사기죄)

㉙ 시세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편취의 범의 ○)

㉚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재산상 이익 ○)

㉛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이를 말소하게 한 경우

㉜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

**194p. (7)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⑦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식회사 신진기획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

⑧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경우(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컴·사)

**200p. (1) 횡령죄의 주체 - 해당하는 경우 (추가)**

⑨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⑩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가 후에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 ○)

**200p. (1) 횡령죄의 주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처분권능 ×)

**201p. (2) 횡령죄의 객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⑫ 광업권(권리에 불과, 재물 ×)

⑬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⑭ 건설회사와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건설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반환을 거부한 경우(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

⑮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매도인 소유)

⑯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특정성 ×, 불법영득의사 ×)

**202p. (2) 횡령죄의 객체 - 해당하는 경우 (추가)**

㉒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매각대금 – 피해자의 소유)

㉓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유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 ○)

㉔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한 경우

㉕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㉖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위탁받은 주식과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3p. (3)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⑬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로 임의전출 하였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동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전출한 경우

⑭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⑮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⑯ 회사 경영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회사를 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면서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경우(횡령죄의 기수)

⑱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203p. (3)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⑬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이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

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한 경우

⑮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주금가장납입 사건)

**204p. (4) 횡령죄의 인정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⑨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이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경우

⑩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경우

⑪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⑫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산의 처분 등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조합규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⑬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위탁받은 주식과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4p. (4) 횡령죄의 인정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④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양도 – 무효)

**205p. (5) 명의신탁과 횡령죄 -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⑤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2자간 명의신탁)

**206p. (1) 사무처리의 근거 표 (추가)**

⑤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신임관계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배임죄 ×)

**207p. (2) 사무의 타인성 해당여부 -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⑮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시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만 수령하고 그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이를 어기고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⑯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

**208p. (3) 재산상 손해 발생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그 연체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여 부정대출을 해주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진 경우

⑦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고 다른 담보방법으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담보교체행위 –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 ×)

⑧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 ×)

**209p. (3) 재산상 손해 발생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경제적 관점에서 판단 – 재산상 손해 ○)

⑮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합리화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경우(중소기업진흥기금 사건)

⑯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수산업경영개선자금 사건)

⑰ 甲과 乙이 공모하여 A회사의 영업비밀인 회로도 등의 기술정보들을 유출한 경우(유출된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가 발생 ○)

⑱ 재벌그룹 소속 甲회사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비상장회사 乙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乙회사를 위하여 수백억 원의 채무보증을 한 상태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乙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당 1원으로 계산하여 위 대표이사 등에게 매도한 경우

⑲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 ○)

**210p. (4) 부동산 이중매매 표 - 배임죄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⑥ 부동산양도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 받았다가 그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 중양도한 경우(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

⑦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경우(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210p. (4) 부동산 이중매매 표 - 배임죄가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경우(매도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211p. (5) 배임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⑮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⑯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전환가격 상당에 배분한 경우

⑰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甲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乙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⑲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경우

⑳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를 반출한 경우

㉑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교부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의 乙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에 충당한 경우

㉒ 재벌그룹 회장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

㉓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㉔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부정 ⑨번과 비교)

**211p. (5) 배임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이사의 임무위배 ×)

⑪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경우(연체료를 지급받은 공급업체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⑫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⑬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 지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5.29, 2007도4949 전원합의체 :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⑭ 퇴사한 전직 동료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파일 등을 복사해 준 경우(범의 ×)

⑮ 회사를 대표하여 기계 제작·설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 ×)

⑯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의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범의 ×)

**213p. ① 배임수재죄 표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⑤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학교법인 부담부분 상당액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거나 그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은 다음 다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⑥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경우

**216p. (1) 장물성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⑨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의 그 금원

**217p. (2) 장물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⑦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乙 - 장물취득죄 × - 甲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⑧ 신탁재산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220p. 14. 권리행사방해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⑧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222p. 15. 강제집행면탈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⑮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은닉 ○)

⑯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222p. 15. 강제집행면탈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⑫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⑬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한 경우(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 ×)

⑭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그 부동산(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⑮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자신이 수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허위 양도 ×)

**227p.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⑩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甲, 乙 –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227p.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⑤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정당행위)

⑥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233p. (2) 형법상 문서 -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신용장에 날인한 은행의 접수일부인(사문서 ○)

⑤ 사자, 허무인명의의 문서(명의인이 실재할 필요 없음 – 일반인에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하게 할 염려 있는 경우)

**234p. 사문서 위조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⑳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날인한 경우

㉑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㉒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㉓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경우(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㉔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B회사 명의 부분 –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 A회사 명의 부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234p. 사문서 위조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십지지문지문대조표(사문서 ×)

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적법한 대표권의 행사 ○)

**236p. 공문서 위조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⑤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문서 × : 길자 사건)

**237p. 공문서 변조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면허증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풀을 약간 칠해 붙여 이를 전자복사기에 넣어 면허증 사본을 복사한 경우(면허증 원본을 행사할 목적 ×)

⑦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위 이혼신고서를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라고 볼수 없음)

**237p. (5) 자격모용에 의한 공(사)문서 작성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⑤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⑥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237p. (5) 자격모용에 의한 공(사)문서 작성죄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⑤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

⑥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임원이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사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

**239p.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⑧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⑨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239p.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⑧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경우(형법상 뇌물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 – 공문서)

**240p.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정정범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⑤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

**242p.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⑯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42p.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㉑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경우

**243p.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②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246p. 종용·유서의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⑭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246p. (1) 음란성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⑥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254p. (1) 직무유기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⑫ 병가 중인 철도공무원들이 그렇지 아니한 철도공무원들과 함께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경우(직무유기죄의 공범 ○, 병가 중인 공무원 – 직무유기죄의 주체 ×)

⑬ 시장과 절친하며 피고인과도 가깝게 지내온 甲의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이 허가대상토지를 골재생산영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허가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허가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甲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해 준 경우(직무를 방임, 포기 ○)

**254p. (2) 직무유기죄와 타 죄와의 관계 -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 경우 (② 내용 수정)**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근무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훈방함에 있어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동 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256p.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한 경우(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 무죄)

⑩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신청을 하려는 특정인에 대하여 추천서발급을 거부한 경우

**257p.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체포·감금죄) (추가)**

⑥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경우

**258p.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⑥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59p. (수정) 뇌물성의 인정 여부 ⇒ <u>수뢰죄</u>의 인정 여부**
**부정되는 경우 ⑦ 삭제**

**259p. 표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⑧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

⑨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부정한 청탁 ×)

**260p. 표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⑲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뇌물 ○)

⑳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경우

㉑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에게 건설업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정한 청탁없이 금전을 제공한 경우

㉒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받은 경우

㉓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

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부정한 청탁 ○ - 제3자뇌물수수죄 ○)

㉕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입찰이 끝난 후 20여 일이 경과한 후 금원을 받은 경우(사후수뢰죄)

㉖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뇌물수수죄 × / 뇌물약속죄, 사후수뢰죄 ○)

**261p. (3) 증뢰죄 - 관련 판례 (추가)**

⑥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제3자뇌물취득죄 ○)

**262p. (4) 뇌물죄의 몰수, 추징 - 관련 판례 (추가)**

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⑩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추징의 대상 – 금융이익 상당액)

⑪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여받은 경우(몰수·추징의 대상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율 등과 실제 이율과의 차이 상당의 재산상 이익)

⑫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의 피고인의 수뢰액
⇨ ▪ 원칙 :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 산정
▪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 ⇨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
▪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수뢰액 산정

**264p. 직무집행의 적법성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⑨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한 경우

**264p. 직무집행의 적법성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⑪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공무집행 ×)

⑫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⑬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대해 그 태도가 오만하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을 교통초소로 강제연행해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경우

⑭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

⑮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노래연습장을 검색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⑯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⑰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한 경우

**265p. (2) 폭행·협박(광의의 폭행·협박) - 폭행 ×(추가)**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267p.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⑯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68p.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⑪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68p.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⑨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⑩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268p. 9. 공용서류 등 무효죄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⑫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

**271p. (1) 범인은닉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甲이 처인 乙의 甲을 위한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하여 乙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乙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甲 – 범인도피방조죄, 乙 – 불가벌)

**272p. (1) 위증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⑧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선서무능력자의 선서–무효)

**274p. (1) 무고죄의 인정 여부 - 부정되는 경우 (추가)**

⑩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⑪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

⑫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킨 경우

⑬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경우

⑭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경우에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⑮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범의 ×)

**275p. (1) 무고죄의 인정 여부 - 인정되는 경우 (추가)**

⑰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국세청장 – 무고죄의 행위 대상 ○)

⑱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⑲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한 경우(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 ○ – 무고죄의 목적 ○)

⑳ 수표발행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수표발행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